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
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장



2019년 7월 11일

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개정이유

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(2019. 2. 14.)의 “지방의회 회의 규칙 권고안”에 따라 우리 구 회의진행 운영상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의장단 선출시기 및 임기를 명확히 하였고, 최근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의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 배정 방법 반영(안 제3조제2항)

나.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기 명확화(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제7항)

다. 의장단 임기 명확화(안 제7조제2항~제3항)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지역선거구 순서”를 “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”로 한다.
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고,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차기 의장·부의장 선거를 실시한다.

② 의장·부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,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의”를 각각 “제3항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다선의원을, 다선의원”을 “최다선의원을, 최다선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부터 제3항”을 “제3항부터 제5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일 전 5일 이내의 의장·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법 제54조를 적용한다.

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선거 후

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<u>다선의원을, 다선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</u></p> <p>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----- -----.</p> <p>⑤ 제4항----- ----- <u>최다선의원을, 최다선의원</u>----- -----.</p> <p>⑥ ----- ----- <u>제3항부터 제5항</u>----- -----.</p> <p>⑦ <u>제6조제1항에 따른 전반기 의장의 임기 만료일 전 5일 이내의 의장·부의장의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 수행은 법 제54조를 적용한다.</u></p>
<p>제7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의원 총선거 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의장·부의장의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.</u></p> <p>③ <u>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u></p>